

산림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2018년 정부지원제도 소개



※ 본 자료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042-481-4136, 1853)으로 문의 바랍니다.

산림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2018년 정부지원제도 소개





산림분야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2018년 정부지원제도 소개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건강한 인재들의
푸른 꿈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CHAPTER 1 창업 지원

01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부	06
02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부	07
03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기재부	08
04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10
0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중기부	10
06 창업선도대학 육성	중기부	11
07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12
08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식품부	12
09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13
10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부	13



작은 변화를
꿈꾸는
진정한 실천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CHAPTER 2 고용 지원

01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부	16
02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부	18
03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부	20
04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식품부	20
05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21
06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중기부	21



미래의 인재들과
꿈꾸는 실천가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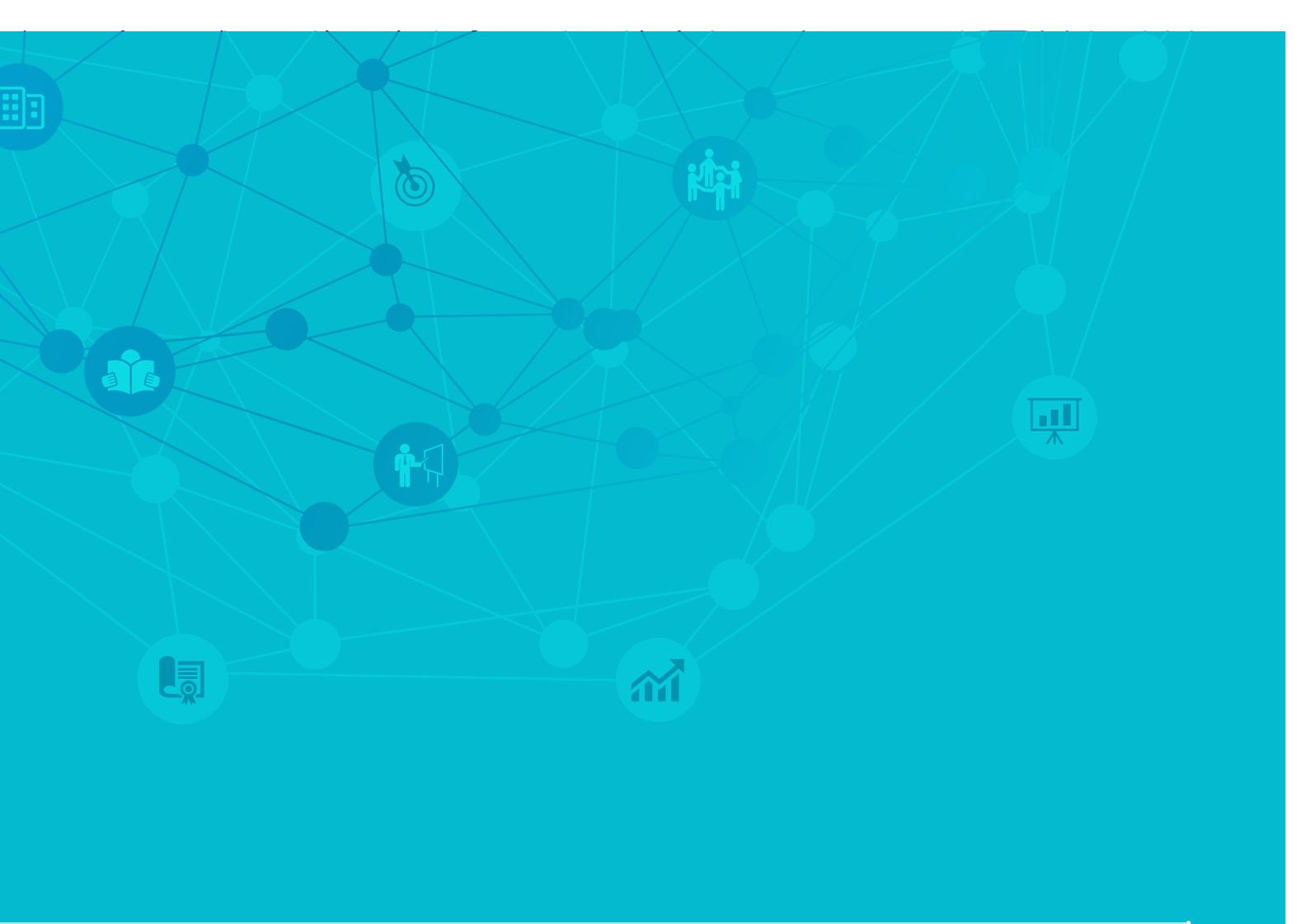
CHAPTER 3 교육·훈련 지원

01 청소년 비즈쿨	중기부	24
02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24
0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부	25
0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부	27
05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고용부	28
06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고용부	28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건강한 인재들의 푸른 꿈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CHAPTER 1

창업 지원

01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부	06
02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부	07
03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기재부	08
04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10
0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중기부	10
06 창업선도대학 육성	중기부	11
07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12
08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식품부	12
09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13
10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부	13



1. 창업 지원

01 ◀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부**

목적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자를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기업)

* '18년도에는 550개팀 지원 예정 / 산림분야는 '산림 및 귀산촌 특화지원 사업'으로 10개팀 선정, 위탁운영기관은 신나는 조합으로 선정

지원

창업공간 지원(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창업비용 지원, 창업관련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창업비용]** 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1천만 원~5천만 원 범위

* **[지원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사업추진 체계

▶ 위탁운영기관



▶ 참여자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창업지원팀 031-697-7711~8)



02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부**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유형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요건 지정 유형에 따라 구분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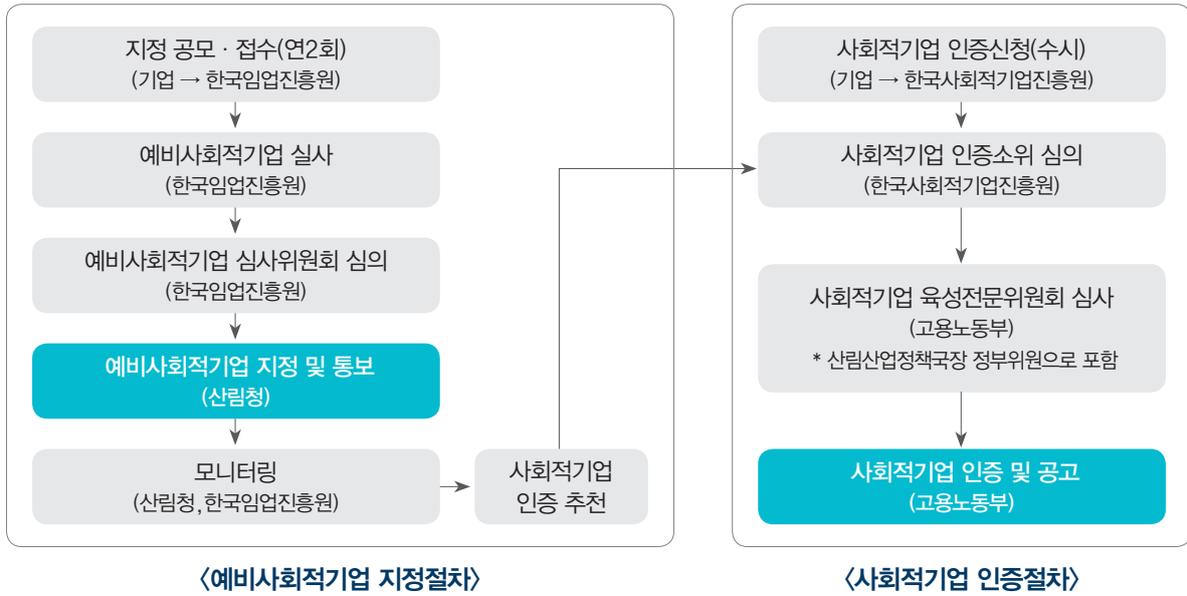
지원사항 지정 유형에 따라 구분 / 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한도(연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70%(1차년) 60%(2차년)	60%(1차년) 50%(2차년) 30%(3차년)
전문인력 인건비	•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고용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기업당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지원 • 월 200만 원 한도로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	90%(1차년) 80%(2차년)	80%(1차년) 70%(2차년) 50%(3차년)
사업 개발비	•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홍보디자인개발, 상품 및 기술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인건비, 근로자 복지비용, 관리운영비 등 금지)	연 5천만 원 한도	연 1억 한도



1. 창업 지원

지정 및 인증 절차



03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기재부**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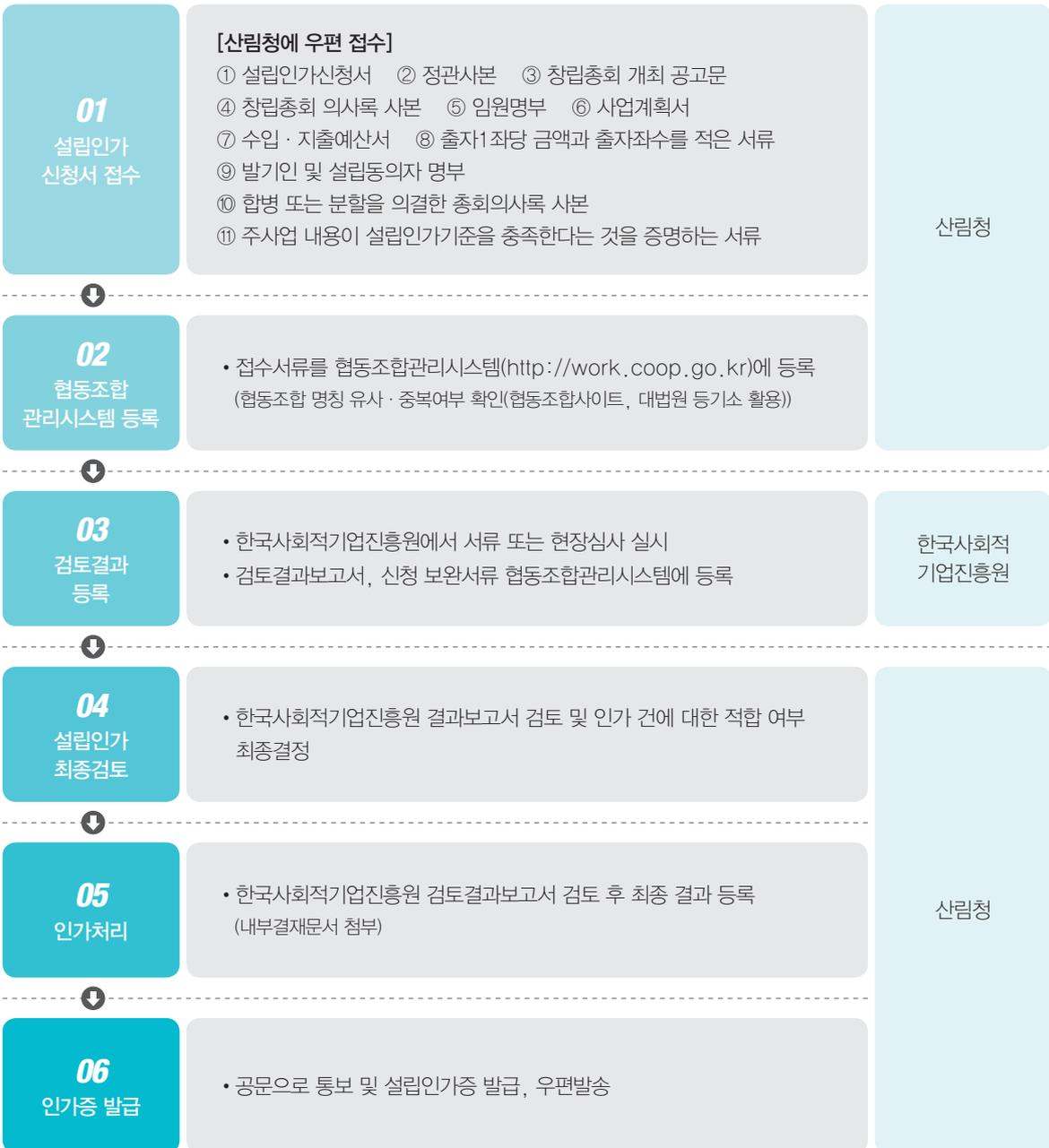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사업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 시 · 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업	• 금융 · 보험업 금지 외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공시 의무	•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독	• 관련내용 없음(상법 등에서 준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원제도	•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회 부여	•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일부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인가·관리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 발기인 5명 이상





1. 창업 지원

04 ↙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지원 ▶ 마을기업 선정 시 최장 2년간 8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액】** 1차년도, 5천만 원 한도 → 2차년도, 3천만 원 한도
* **【마을기업('16년말)】** 총 1,446개(산림분야는 51개 - 임산물 40, 목제품 10, 산림교육 1)

사업추진 체계

교육 이수
(지원기관)



마을기업 신청
(주민 → 기초단체)



심사 및 추천
(광역단체)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05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중기부**

목적 ▶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

대상 ▶ 창업 후 3년~7년 이내의 기업 1,000개사 내외

지원 ▶ 사업모델 혁신,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 연계, 성과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억원 / 2년간

사업추진 체계

신청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문제 진단



자금 및 서비스 지원



사업결과 보고



사후 관리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부 042-480-4341)



06 창업선도대학 육성 **중기부**

목적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등까지 패키지 지원

* **【창업선도대학 지정 현황】** 전국 40개 대학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마케팅 활동 등) 자금 지원,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교육, 경진대회, 자율·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창업아이템 지원사업은 최대 1억원 지원

사업추진 체계

▶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별 공지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 세부프로그램별 절차 상이

참고

창업선도대학 지정 현황 / 40개

지역	대학명
서울(9)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인덕대, 한양대
경기·인천(6)	경기대, 가천대, 단국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인천대
강원(2)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충청(7)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밭대, 호서대
호남(6)	광주대, 순천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영남(10)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대, 동서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



1. 창업 지원

07 ◀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목적

산업간 융복합, IT 기술 접목 등 창의적·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창업 3년 이상 관광관련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상품 개발비, 국내·외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구분	응모 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예비관광벤처기업 (40여개)	• 예비창업자 • 창업 3년미만의 사업자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 인큐베이팅	최대 2,250만 원 (서비스·상품개발 지원)
관광벤처기업 (30여개)	• 예비관광벤처기업 •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투자자지원, 마케팅 등 성장 엑셀레이팅	최대 1,050만 원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추진 체계



※ 주관기관 : 한국관광공사(관광벤처팀 02-729-9461~4)

08 ◀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식품부**

목적

농식품 창업 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겸한 온·오프라인 전시 홍보 및 판로 지원

대상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제품을 보유한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서울(양재 aT), 부산(남포동)의 A-startup 마켓(제품관)에 입점하여 전시·판매 및 제품별 상담회 및 품평회를 통한 판로지원

사업추진 체계



※ 주관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 02-739-5545, 054-461-9540)



09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목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

* **【창업보육센터】** 262개(수도권 89, 강원권 14, 충청권 46, 영남권 69개, 호남권 40, 제주 4)

지원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사업추진 체계

모집공고·접수



심사 및 선정



입주계약 체결



입주

※ 주관기관 : (사) 한국창업보육협회(사업팀 042-346-9261, 9606)

10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부**

목적 ▶ 농산업·농식품·BT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기술·경영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장 지원

대상 ▶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 **【지원 규모】** 100개 업체 내외 / 업체당 7백만 원 내외

사업추진 체계

모집공고·접수



신청자격 검토



설문 및 인터뷰



평가



보육계약 체결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 주관기관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 063-919-1410, 1412)



작은 변화를 꿈꾸는
진정한 실천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CHAPTER 2

고용 지원

01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부	-----	16	
02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부	-----	18	
03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부	-----	20	
04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식품부	-----	20	
05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	21	
06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중기부	-----	21



2. 고용 지원

01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부**

- 목적**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
- 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지역사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모든 사업주	1. 교대제 도입제 * 교대제 실시로 실업자 추가 고용 2. 근로시간 단축제 * 1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 3. 일자리 순환제 * 1개월 이상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 실업자 추가 고용	1. 인건비 / 증가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기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조</td> <td>우선지원</td> <td>1,920만 원 (분기별 24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td> </tr> <tr> <td rowspan="2">비제조</td> <td>우선지원</td> <td>960만 원 (분기별 24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td> </tr> </tbody> </table> 2.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기업 - 증가근로자 1인당 월 10~40만 원 3. 설비투자비 / 우선지원기업 - 총 투자비의 1/3범위내에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5백~1천만 원 지원 * 최대 2억원 한도 4. 설비투자비 용자 / 모든기업 - 총 투자비의 2/3범위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1~2%	구분	기간	지원액	제조	우선지원	1,920만 원 (분기별 240만 원)	대규모	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	비제조	우선지원	960만 원 (분기별 240만 원)	대규모	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
구분	기간	지원액														
제조	우선지원	1,920만 원 (분기별 240만 원)														
	대규모	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														
비제조	우선지원	960만 원 (분기별 240만 원)														
	대규모	480만 원 (분기별 120만 원)														
시간 선택제	모든 사업주	아래 요건을 충족한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 	1. 인건비 / 신규 근로자 1인당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매월 6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360만 원 (매월 30만 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근로자 및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으로 임업분야는 근로자 100명 이하, 매출액 1천억원 이하로 대부분 해당

2. 고용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역·성장산업	성장유망업종 * 산림바이오 매스 포함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인 10명 미만의 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성장유망업종 ① 신재생에너지 ② 탄소저감에너지 ③ 고도물처리 ④ LED 응용 ⑤ 그린수송시스템 ⑥ IT융합시스템 등	1. 인건비 / 신규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성장유망업종</td> <td>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td> </tr> </tbody> </table>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구분	지원액	성장유망업종	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		
구분	지원액								
성장유망업종	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								
전문인력	우선지원기업	경력, 자격, 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 경영, 무역,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	1. 인건비 / 신규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td> </tr> </tbody> </table>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분기별 180만 원)								
고용촉진 지원금	모든 사업주	아래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도서지역 거주자	1. 인건비 / 신규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반기별 36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360만 원 (반기별 180만 원)</td> </tr> </tbody> </table>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지원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반기별 3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반기별 18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반기별 3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반기별 180만 원)								

사업추진 체계





2. 고용 지원

02 <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부**

목적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및 정규직전환 지원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

유형 시간선택제 전환, 일·가정 양립, 정규직 전환지원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	<p>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학습 등)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요건을 허용한 사업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제도 도입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3. 전환 사유해소 시 전일제 복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모든기업</td> <td>48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td> </tr> </tbody> </table> 2.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형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명당 월 20만 원 3. 대체인력지원금 / 우선지원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매월 6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360만 원 (매월 30만 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액	모든기업	48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모든기업	48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우선지원 기업	<p>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p> <p>재택, 원격근무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근로자당 월 최대 40만 원 *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사업장당 70명 이내), 최대 1년 2.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시스템) 기업 투자비의 1/4 이내 2천만 원 한도 - (용자, 설비·장비) 기업 투자비의 1/2 이내 4천만 원 한도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1% 										
정규직 전환	우선지원 기업, 중견기업	<p>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저임금의 110% 이상 2.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금증가액 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 원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2. 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수준 관계없이 월 20만 원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 										

2. 고용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우선지원 기업, 대규모 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재고용 * 출산, 임신,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용 인건비 /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매월 6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360만 원 (매월 30만 원)</td> </tr> </tbody> </table> 육아휴직 부여 /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360만 원 (매월 30만 원)</td> </tr> </tbody> </tabl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240만 원 (매월 2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120만 원 (매월 10만 원)</td> </tr> </tbody> </table>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720만 원 (매월 60만 원)</td> </tr> <tr> <td>대규모</td> <td>360만 원 (매월 30만 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 원 (매월 20만 원)	대규모	120만 원 (매월 1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360만 원 (매월 3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 원 (매월 20만 원)																								
대규모	120만 원 (매월 10만 원)																								
구분	지원액																								
우선지원	720만 원 (매월 60만 원)																								
대규모	360만 원 (매월 30만 원)																								

사업추진 체계





2. 고용 지원

03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부**

목적

취약계층, 미취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 탈출 촉진

대상

경영상 이유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

지원한도 1일 상한액 46천원,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 **【휴업】** 1월간 근로시간 20%를 초과하여 휴업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지원

* **【훈련】**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4과 훈련비를 지원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을 지원

사업추진 체계



04 ↙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식품부**

목적

농업법인 인턴 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대상

만18세~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농업법인 :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6명 이상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인턴 인건비 월 50% 지원

* 월 10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법인당 3명(농업법인 선지급 → 농정원 사후 지원)

사업추진 체계





05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목적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

대상 ▶ 종업원 1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핵심인력은 해당 사업주가 지정한 상시근로자(가입인원,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및 비영리기업은 제외

지원 ▶ 5년 이상 장기 재직 근로자, 최소 2천만 원 이상 목돈 마련

* **【납부】** 근로자 720만 원(月 12, 5년) + 기업 1,500만 원(月 25, 5년)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 **【기업 지원】** 기업납입금 전액을 기업비용 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각종 정책자금 지원 가점 부여

사업추진 체계

공제가입 신청

(사업주 · 근로자)



심사 및 승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제금 납입

(사업주 · 근로자 → 은행)



서비스 이용

(근로자)

06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중기부**

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

대상 ▶ 5명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이하)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명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군필자는 만 39세 이하

지원 ▶ 2년 근속한 청년 근로자, 최소 16백만 원 이상 목돈 마련

* **【납부】** 청년 300만 원(月 12.5) + 기업 400만 원(月 16.6) + 정부지원 900만 원(月 37.5) + α = 1,600만 원

* **【기업 지원】** 정부가 기업에 700만 원 지원하고, 기업은 이 중 400만 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

☞ 3년형을 신설하여 생애 최초 취업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공제 가입 허용 추진('18. 하반기 예정)

* **【납부】** 청년 600만 원(月 16.6) + 기업 600만 원(月 16.6) + 정부지원 1,800만 원(月 50) + α = 3,000만 원



미래의 인재들과
꿈꾸는 실천가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CHAPTER 3

교육·훈련 지원

01 청소년 비즈쿨	중기부	-----	24
02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	24
0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부	-----	25
0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부	-----	27
05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고용부	-----	28
06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고용부	-----	28



3. 교육·훈련 지원

01 ↙ 청소년 비즈쿨 **중기부**

- 목적**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정신, 진취성 등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 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500개교 내외
- 지원** ▶ 기업가 정신 및 창업·경제 교육, 동아리·전문가 특강 지원, 비즈쿨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연수 등



02 ↙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상** ▶ 창업 희망 대학생 / 4년제 3학년 이상, 2년제 2학년 이상
- 지원** ▶ 학기 학자금 전액 및 창업 준비 장려금(학기당 2백만 원)

*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 수 × 6개월간 의무적으로 창업 유지
(창업 실패 시, 중소기업 취업으로 대체 가능)





3. 교육·훈련 지원



03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 **중기부**

목적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훈련직종**】 122개 직종(기간산업직종 46개, 전략산업직종 26개, 서비스산업직종 50개)으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 산림분야는 미포함

대상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유형

훈련기관 →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 → 출석 80% 이상(월 21~41만 원)

사업추진 체계

▶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참고

창업선도대학 지정 현황 / 40개

대분류	기간산업직종(46개)	전략산업직종(26개)	서비스산업직종(50개)
경영·회계·사무(5)			물류관리, 품질경영, 마케팅전략,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5)
교육·자연·사회(1)		빅데이터전문가(1)	
문화·예술·디자인·방송(8)		우선지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영상제작, 3D영상제작, 게임콘텐츠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8)



3. 교육·훈련 지원

참고

창업선도대학 지정 현황 / 40개

대분류	기간산업직종(46개)	전략산업직종(26개)	서비스산업직종(50개)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3)			국제관광마케팅, 크루즈, 마리나(3)
건설(17)	건축목공, 건축시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조경, 가스설비시공, 열병동설비, 건축설비, 설계·시공, 창호시공, 철도안전(11)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4)	U-city(건설·토목·IT), BIM(2)
기계(33)	기계설계제작, 공유압, 생산기계, 치공구, 기계조립, 선체의장, 선체조립,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 사출금형, 선방,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기계, 공조냉동기계, 열기계, 시스템제어, 측정(18)	의료기기제작,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정(6)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생산정보시스템, 선박기관정비, 드론 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 스마트 팩토리 운영관리(9)
재료(5)	레이저용접, 수중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4)	품질관리기술자(1)	
섬유·의복(2)	염색가공(1)		패션디자인(1)
전기·전자(13)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 전자시스템 제어, 전자부품개발, 전기시스템 제어(7)	LED 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생산, 태양광발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6)	
정보통신(18)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2)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3)	정보시스템구축,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RFID·USN응용,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홈IoT관리, 산업IoT관리, 클라우드 운영관리,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UI 전문가,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개발(13)
인쇄·목재·가구·공예(5)	특수인쇄, 평판인쇄(2)	가구설계제작(1)	출판, 보석디자인(2)
환경·에너지·안전(6)	광산자원개발생산(1)	태양에너지생산(1)	생태복원·관리, 산업환경, 비파괴검사, 환경보건관리(4)
농림·수산(6)		종자생산·유통, 할랄/코셔, 스마트팜구축(3)	말조련, 곤충사육, 동물매개 치유(3)



0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부**

목적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대상 / 업종 제한 없음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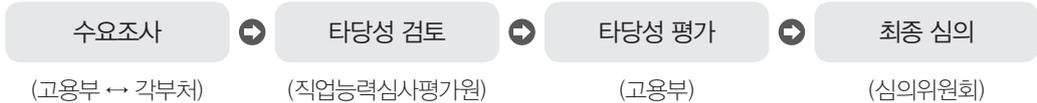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단체 등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지원 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신·개축 비용, 장비 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 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 반 운영비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수당	사업주 훈련 환급방식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등	수요인원에 따라 지급	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 수강생만 지원

사업추진 체계

▶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3. 교육·훈련 지원

05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고용부**

목적

취·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 촉진과 생활안전 도모

대상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

지원

고용부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해 70~100%. 훈련비용 지원 및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 장려금(월 11.6만 원) 지원

사업추진 체계

훈련상담

(훈련생-고용센터)



계좌카드 발급

(농협, 신한카드)



훈련 참여

(훈련생)



취업/이력관리

(훈련기관, 센터)

※ 주관기관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06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고용부**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 가능성 제고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 근로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육아휴직자 등

지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 원 한도 지원(자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지급)

사업추진 체계

계좌 신청

(훈련생-고용센터)



계좌카드 발급

(농협, 신한카드)



훈련 참여

(훈련생)



비용 정산

(훈련기관 ↔ 금융)

※ 주관기관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